저작권법위반

[서울중앙지방법원 2011. 4. 28. 2011고단721]



【전문】

【피고인】

【검 사】정광수

【변 호 인】변호사 한연규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벌금 3,000,000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피고인으로부터 11,762,000원을 추징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

【이유】

]